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 배치전검진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명 : 경산시청

2026-05-13 ~ 2026-05-12

공정 (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 년수	유해인자	생물학적노출지표 (참고치)	건강 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 적합
산림과	최화석	M	64	00년 01개월	에틸벤젠 헥산 크실렌(배치 전) 톨루엔(배치 전) 노말헥산(배 치전)		D2	고혈압(조절부족)	건강상담, 근무 중 치료	나
							D2	신장 질환 의심 (단백뇨) (톨루엔)	건강상담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건강진단 기관명 : 서명의료재단 세명종합병원 건강진단 의사명 : 진대규  2026년 05월 15일 진대규 (서명 또는 인)			